

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7년 10월 24일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10. 16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)

□ 제안이유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이 제7조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
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 변경(안 제1조)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 →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8. 11. ~ 2017. 8. 31.) 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규제 심사대상 미해당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변경으로 제외 대상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

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

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3., 2014.1.29.>